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1가단1146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7. 6.

판 결 선 고 2022. 8. 10.

주 문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12. 1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. 5. 3. 접수 제646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E에 대한 채권

E은 F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. F 주식회사는 E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2003. 7. 31. G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고, G유한회사는 2008. 3. 31. 위 채권을 다시 H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며, H 주식회사는 2011. 12. 28.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I에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고, 원고는 2012. 9. 26. 위 채권을 주식회사 I로부터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이 E에게 통지되었다.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21752 양수금 사건으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5. 16. E은 원고에게 28,616,269원 및 그 중 8,179,926원에 대하여 2012. 9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13. 7. 19. 확정되었다.

나. E과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

E과 피고들의 부친인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1965. 1. 21. 접수 제1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, 순번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1983. 11. 29. 접수 제7681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. 12. 12. 사망하였다. J의 배우자인 K와 자녀들인 피고들, E은 2020. 12. 12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/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. 5. 3. 접수 제64657호로 피고들이 각 1/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재산상태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. 반면 E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에서 본 양수금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울산 동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.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,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).

나.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/9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E이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, 피고들과 모친 K가 종래 E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주면서 E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었다면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E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, E이 민법 제1041조 등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분 2/9 지분에 관하여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.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. 5. 3. 접수 제646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성

별지